

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)

○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의 및 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과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묘지·납골시설· 화장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”을 “묘지· 화장시설· 봉안시설·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11조”를 “제1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7조의2 별표1 및 제13조”를 “제11조 별표1 및 제18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조 및 제11조 등”을 “제10조”로, “제2조 및 제8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5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9호”를 “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17조”를 “제19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단서 중 “한다.(단, 납부된 사용료 등은 허가 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)”를 “한다.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제1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제1항”을 “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”로 한다.

제25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